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7-24

전 주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4가단21597 부당이득금반환 등

원 고 주식회사 [redacted]

피 고 [redacted]도

변 론 종 결 2015. 4. 14.

판 결 선 고 2015. 6. 9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62,081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소외 A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38607호로 대여금 631,092,82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. 4. 19.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은 그대로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7-24

확정되었다.

나. 위 A은 소외 [redacted]종중(이하 '소외 종중'이라 한다)으로부터 '[redacted]시 [redacted]구 B 임야 173694㎡(이하 '이 사건 임야'라 한다)'를 매수하고 2012. 7. 10. 취득세 명목으로 62,081,0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한 후, 같은 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그런데, 소외 종중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위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종중의 대표자를 사칭한 자에 의하여 위조된 서류에 기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이 법원 2012가합5697호로 A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.

라. 위 법원은 2013. 3. 21. '피고(A)는 원고(소외 종중)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2. 7. 10. 접수 제439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'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, 위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의 이의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마.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2012. 7. 10.자로 마쳐진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. 4. 29.자로 말소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청구

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A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었고, A이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에게 취득세를 신고한 행위 역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, 피고에게 납부한 위 취득세 62,081,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7-24

환해야 할 것인바, 원고는 A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A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 62,081,000원의 반환을 구한다.

나. 판단

그러므로 살피건대,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·A의 취득세 납부·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 등에 관한 일련의 구체적 경과는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A의 위 취득세 신고 및 납부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를 당연 무효라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또한 A의 위와 같은 취득세 신고 및 납부와 피고의 취득세 수납은 지방세법,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서, 피고의 과세처분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의 위 취득세 수납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 할 수도 없다.

따라서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판사 이원근